

파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공청사) 결정(변경) 열람·공고

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376-1번지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공공청사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. 1. 22.

파 주 시 장

1.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결정(변경)조서

가. 공공청사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-	공공청사	법원읍 행정복지센터	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376-1번지	-	증 3,378	3,378	-	

나. 공공청사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공공청사	· 행정복지센터 신설 - 면적 : 3,378㎡	· 행정복지센터 시설이용의 편의성 향상과 주민생활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

※ 위 내용은 관계기관 협의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.

2. 공람 및 의견 제출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(초일불산입)
3. 공람장소 : 파주시청 도시개발과(☎031-940-4712)
4. 주요내용 : 파주 도시관리계획(공공청사: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신축) 결정(변경)
5.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도서 : 게재생략
7. 기타사항은 파주시 도시개발과(☎031-940-4712) 및 회계과(☎031-940-590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